

#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 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유무 확인

- Q \*기존 인허가(신고) 실시 완료 사항
    - 폐수배출시설명 및 배출량
      - 조립제품 제조시설 부품공장 1,458(m<sup>3</sup>/일)
      - 오수 295(m<sup>3</sup>/일)
    - 폐수처리능력 3,000(m<sup>3</sup>/일)
- 기 신고된 배출시설외에 세탁시설(5(m<sup>3</sup>/일))을 신규로 공장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기존에 신고된 오염물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탁시설을 설치하기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배출시설)에서 “76.세탁시설”은 용적이 2m<sup>3</sup>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m<sup>3</sup>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및 시기에 관한 문의

- Q 하수도법 제66조 이하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67, 68조 기술관리인 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법규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별도준공) 시점과 건축물 준공검사 시점에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을 경우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시에 기술관리인을 선임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건축물 준공검사 후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업체 및 관리인 확정이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A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일정규모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 운영 이후(준공검사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이후)부터 선임하면 될 것이므로, 귀하가 문의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시 기술관리인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 기술관리인의 선임신고사항에 대해 하수도법상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TMS 설치 기간 문의

- Q 당사는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7호) 일부 개정에 따라, TMS 설치 대상이 된

사업장입니다. 설치 기간에 대해 알아 본 바로는, 아래와 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초공시일자 ('08. 1. 15) (6개월) → 설치 만료일 ('08. 7. 14) (6개월) → 폐쇄 만료일 (연기조건 : 공정 폐쇄) ('09. 1. 14)

1) 만약, 설치 만료일 이후 공정 폐쇄를 조건으로 6개월 연기를 하였다가, 이 기간('08. 7. 14~'09. 1. 14) 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년 30일 미만 가동 등”의 면제 조건에 설치는 맞추어 폐쇄하지 않는 행위의 가능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설치 만료일('08. 7. 14)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여, 방지 시설 설치면제를 받는다면, TMS 설치를 면제 받을 수는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A**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바목에 따라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기간 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여야 하고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를 받을 경우에는 '08년 7월 14일 이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착면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조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항목에 대하여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면제**

**Q** 악취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기준 대비 4% 정도로 배출되고 있는 악취 시설이 있습니다. 1) 이처럼 기준 대비 현격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2) 방지시설 면제를 위해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A** (1)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악취방지계획서를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적절한 악취저감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기 위하여 측정항목 등을 별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사업장에서 공정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악취에상농도 등을 산정한 자료(악취방지계획 등)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자 악취방지법을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 신고대상 여부**

**Q**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현재 배출 중인 폐기물의 경우 일련의 작업 등으로 인해 5톤 이상 발생되고 있어 배출자신고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신고량 40톤) 만약 현상황에서 신규폐기물이 연간 5~10톤 정도 발생될 경우(일련의 작업/공사로 인한 배출 아님)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 300kg이상 배출사업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도 아닙니다.) 신규폐기물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당초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전체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